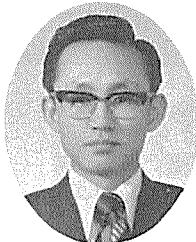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의 立法背景과 概要



田允喆

〈經濟企劃院公正去來室·總括課長〉

1. 立法背景

80年 12月 立法會議를 통과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 81년 4月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法律은 지난 60年代 중반부터 立法에 관한 試圖를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15年이 경과한 오늘에 그 実現을 보게 되었다.

公正去來法의 基本理想은 경제운영방식을 民間主導로 전환하여 市場機能을活性化시켜 經濟의 能率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民間企業의 創意를 존중하고 經濟의 能率을 提高시키기 위하여서는 經濟構造를 有効競爭体制(Effective Competition)로 전환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시켜야 한다.

公正去來法은 이와 같은 資本主義經濟의 理想을 실현시키기 위한 制度的 裝置이다. 그렇다면 60年代初부터 경제개발에 치중해온 정부가 80年代에 들어와서야 이러한立法裝置를 한 배경은 어떤 것인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民間主導로의 經濟運用方式 전환

지난 20年間 우리나라 경제는 經濟構造와 규모면에서 大型化하고 다양해졌다. 1人當 国民總生產額은 과거 61年 82달러이던 것이 80年에는 1,503 달러로 늘어 났으며 總輸出額도 1億달러도 안되던 것이 지난 해에는 175億달러로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企業이 大型化되어 1億달러이상의 輸出業체만도 22個에 달하고 있다. 또한 產業構造面에서도

典型的인 農業國家에서 新興工業国家로 变모하였다.

이와 같은 高度成長은 企業에 대한 保護 및 支援과 政府의 積極的인 介入에 의한 開發戰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0年代 우리 경제는 市場規模는 挪少했고 企業은 零細性을 免치 못했으며, 따라서 供給能力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와 같은 經濟條件下에서 企業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보호와 支援에 의한 開發戰略이 불가피하였다. 즉 政府는 戰略產業을 선정하여 金融 및 稅制面에서 지원을 集中하였고 輸入을 制限하거나 새로운 企業의 신규참여를 제한함으로써 既存企業의 성장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족된 公급능력으로 均衡的 配分을 하기 위하여 價格과 수급에 대한 規制를 하여 왔다. 따라서 과거의 經濟施策은 產業에 대한 보호와 기업에 대한 規制中心의 開發戰略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開發戰略이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만큼 키워놓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經濟條件를 감안할 때 이러한 開發戰略은 그 한계를 들어 내게 되었다. 經濟 및 企業規模가 확대성장되었고 產業成長에 따라 公급능력도 크게 늘어 났으며, 중요한 것은 經濟構造가 복잡다양화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제여건하에서 과거에 써왔던 保護 및 規制中心의 經濟施策은 그 관리능력에 있어서의 한계를 가져 왔고, 이를 지속할 경우 市場機能을沮

害하여 經濟와 가격구조를 歪曲化시키는 副作用마
쳐 나오게 되었다.

即 保護政策을 지속할 경우 價格과 品質競爭을
沮害시킴으로써 低生產性限界企業의 恒久的인 温存
을 보장하고 그 결과 国民經濟全体가 競爭力의 약
화된다.

이와같이 약화된 競爭力を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保護가 惡循環됨으로써 구조적인 인플레이의 蔓延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30余年 지속되어온 인플레이의
原因中 하나로 이와같은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保護為主의 開發戰略에서 胚胎된 부작용
과 經濟 및 가격구조의 歪曲化現象을 시정하고 競爭
原理를 도입하여 市場機能의 活性화와 경제의 능률
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經濟운영방식을 民間主導로
転換한 이유가 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國際화시대에 있어서 과감하
게 開放体制에 적응해야 할것이고 賦存資源이 빈약
한 우리立場에서 資源配分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
는 것이 今后의 課題라면 競爭体制의 도입과 그 定
着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能率向上, 品質改善, 國際競爭力強化, 物
價의 구조적안정등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懸案問題
는 과거에 써왔던 保護為主의 產業政策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市場構造의 独寡占深化와 그 弊害

우리나라의 市場構造는 원인이나 어떻든 個別商品에 있어서의 市場集中度가 계속 深化되어 왔으며, 少數企業에 의한 경제력이 過度하게 집중되어 있다. 〈表 1〉은 個別商品에 있어서의 市場集中度의 年度別推移이다.

〈表 1〉 個別商品의 市場集中度

(单位=品目)

区分 年度	独占形	複占形	寡占形	小計	競爭形	合計
	1社70%以上	2社80%以上	3社50%以上		3社50%未満	
74	598	91	693	1,382 (70%)	597 (30%)	1,979 (100%)
77	775	324	736	1,535 (86%)	297 (14%)	2,132 (100%)
增加率 (%)	29.6	256.0	6.2	32.8	▲50.3	7.7

獨占・複占 및 寡占 등 独寡占形이 74年에 비하여
77년에는 全體 2000個 品目中 86%를 占하고 있다.
分類上의 차이로 이 表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79
年에는 独寡占이 89%를 차지하고 이른바 競爭形은
불과 11%程度이다. 또한 〈表 2〉는 少數企業의 社勢
拡張에 따른 經濟力집중현상의 年度別推移이다.

〈表 2〉 少數企業에의 經濟力 集中

区分 누적복합 기업수	系列企業体			出荷額(億 원)		
	74	77	増加率 %	74	77	増加率 %
상위 5사	46	87	89.1	6,733	22,737	237.7
10	77	131	70.1	9,260	31,398	232.0
20	99	229	131.3	13,466	43,308	221.6
30	125	275	120.0	15,581	50,577	224.6
제조업 전체	24,125	28,024	15.7	55,646	154,670	178.0

上位 20個 財閥企業이 갖고 있는 系列企業体数는
74年度의 99個에서 77年度에 229個로 늘어남으로써
131.3%가 증가되었으며 全體製造業의 同期 증가추
세가 15.7%에 不過하다는 것에 比하면 大企業에의
경쟁력집중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個別商品의 市場集中度深化와 少數企業에 의
한 경제력의 집중현상은 各種 企業結合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競爭制限의 企業
結合의 類型은, 첫째, 相互 競爭關係에 있는企
業의 单独 또는 共同引受事例, 둘째, 競爭관계에 있는企
業을 系列企業을 通過해서 引受한 事例, 세째,
同一製品生產企業이 다수 있는데 그중 1個企業이
原料 또는 中間生產企業을 独占的으로 設立하거나
引受한 事例, 네째, 市場支配的事業者가 原料 또는
中間財에 관한 既存企業이 多数 있는데 不拘하
고 自體下請企業을 設立하거나 인수한 事例, 다섯째
自體생산제품의 再販売 가격유지를 위한 流通
機構의 支配事例, 여섯째, 市場支配的事業者가 中
소기업에 속하는 業種을 인수한 事例가 그것이다.

70年代에 있어서의 企業結合에 관한 上場企業의
年度別, 形態別合併推移는 〈表 3〉과 같다. 여기서 水
平合併이란 同種業種間의 企業結合이고 垂直合併이
란 原料業種과 最終제품생산業種間의 결합이며 混
合合併이란 競爭業種이나 원료및 제품업종간의企

□ 特輯 : 石油流通과 公正去來法

〈表 3.〉 상장기업의 연도별 형태별 합병추이
(单位:件)

形態別 年度別	수 합 병	수 직 합 병			혼 합 병	合計
		후 방	전 방	소 계		
1970	5	1		1	1	7
1971	8				2	10
1972	11		1	1		12
1973	13	6		6	7	26
1974	5	4	1	5	1	11
1975	11	3		3	10	24
1976	7	2	1	3	6	16
1977	6		1	1	7	14
1978	1				8	9
計	67	16	4	20	42	129
構成比 (%)	51.9	12.4	2.6	15.0	33.1	100

業結合이 아니고, 別個의 業種끼리의 企業結合이다. 「문어발」式 企業結合 또는 百貨店式企業結合은 이러한 混合合併形態를 의미한다.

이상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独寡占實態와 少數企業에 의한 經濟力集中現象을概觀하였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独寡占化의 深化와 少數企業에 의한 經濟力集中의 加速화는 國民經濟에 어떠한 壞害나 利点이 있는 것인가. 独寡占價值判断論爭, 그 規制是非는 极히 理論上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理論的 배경과 우리의 경영현실을 연계시켜 우리의 立場을 정리하여야 할것이다. 独寡占擁護論者는 「원」學派의 指導的理論經濟学者인 슘페터(Schumpeter, J. A 1883-1950)이다. 슘페터의 独寡占擁護論을 요약하면 独寡占은 規模經濟의 技術的利益을 추구할 수 있고 技術革新이 촉진된다는데 그 理論的 根拠을 두고 있다.

여기서 規模經濟의 이익이란 生產規模의 확대로 平均生產費를 인하시켜 國際競爭力面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은 開發初期段階에서는 어느 程度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反論으로서는 最適單位를 넘거나 多工場企業은 規模經濟의 技術的利益을 시현할 수 없다는 유력한 立論이 있다.

即, 현재의 공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평균생산비를 引下시킬 수 있지만, 同種商品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른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生產費의 引下效果가 없을 뿐만 아니라 最適規模를 넘

는 規模拡大는 오히려 평균생산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論拠는 独寡占企業은 超過利潤을 획득하고 이를 研究開發費에 투입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이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独寡占價格은 本質上 上方彈力의이고 下方硬直性을 갖고 있어 独寡占利潤의 계속적인享受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價格메커니즘下에서는 사실상 기술혁신의 誘因이 없어 경쟁구조에 있어서 보다 停滯性이 크고, 新商品개발에 소극적이라反論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規模經濟利益追求의 가능성이나 技術革新이 촉진된다는 이론에 대한 反論以外에 独寡占은 어떠한 장해가 있는가. 첫째 独寡占企業은 市場支配的地位를濫用함으로써 市場秩序를 교란시키는 많은 不公正去來行為를 하게 되고, 둘째 原價節減이나 生產性向上노력을 소홀히 하여 經濟能率을 沢害함으로써 國際競爭力を 약화시키고, 세째 價格의上方彈力과 下方硬直性으로 独占利潤의 계속적인享受가 가능한 반면 消費者利益을 侵害하고, 네째 市場의 自動調節機能이 沢害되어 需給 및 價格機能의硬直化로 資源分配을 歪曲化시키며, 다섯째 少數企業에의 經濟力過度集中은 企業本質을 약화시킬 뿐아니라 分配上의 衡平을 沢害하게 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이른바 独寡占은 企業自體로 보거나 消費者 및 國民經濟全体에 대하여 많은 逆機能을 가져다 주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第5共和国憲法 第120條 第3項은 独寡占의 壞害를 適切히 規制調整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企業의 創意性을 개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國民經濟의 本質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 外國의 独禁정책전개背景

主要國이 競争体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独禁法을 제정한 시기를 보면, 美國이 1980年度 셔먼法을 制定하였고, 1914年에 크레이튼法과 聯邦去來委員會法을 제정함으로써 独禁法体系를 완비하였으며 캐나다는 1923年度에 独禁法을 制定 実施하였다. 이와 같이 美國, 캐나다등 20세기初에 独禁法을 제정한 소수의例外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2차대전 후부터 60年代末까지 独禁法을 制定 完了하였다. 이

러한 현상은 2차대전후의 過度期 내지 転換期에 있어서의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처手段이었음이 분명하다.

主要國이 独禁政策을 실시하였던 당시의 經濟指標를 보면, 輸出이 100億달러미만이고 1人當国民所得이 1,000달러미만인 경제여건하에서 이러한 独禁政策이 實施되었다. 여기서 西獨과 日本의 独禁政策내지 競爭制限政策의 배경과 展開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西獨의 경우에는 戰后 西獨經濟의 暫時하고 고도성장이 축적된 資本과 技術이외에 新自由主義라는 西獨의 독특한 경제정책에 크게 힘입었다고 평가된다.

2차대전후 대부분의 先進國家에서 케인즈안의 입장에서 정부는 경제에 크게介入하였다. 이에 비하여 西獨은 新自由主義 입장에서 비교적 다른 国家보다 덜介入하는立場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成長率·物價安定 및 國際收支面에서 오히려 정부의 간섭이 많았던 다른 国家에 비하여 활동하였다.

新自由主義는 프라이버그大学의 오이肯(Eucken) 교수가 제창한 經濟理念으로서 에르하르트 首相에 의하여 정책으로 실천되었다. 新自由主義는 정부의 경제에의 개입을 반대한다. 경제는 民間의 創意의이며 합리적인 활동에 의해 운용될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主張을 그理論的 근거로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민간경제활동을 위하여는 市場의 価格機構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新自由主義는 물가안정과 함께 경제의 자유화를 1次的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나치政权의 統制經濟를 批判한 것 이었다. 新自由主義가 전통적인 自由主義와 다른 점은 국민의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新自由主義는 우선 市場經濟를 확립시켜 資源을 효율적으로 配分되도록 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이 기반위에서所得재분배政策等을 積極的に 福祉政策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같은理念이 실현된 경제를 社會市場경제라 한다. 이러한 이념을 입법화한 것이 57년에 제정한 西獨의 競爭制限禁止法이다.

둘째로, 日本의 경우에는 2次대전敗戰과 동시에 47년 맥아더占領軍에 의하여 美國이 施行하고 있는

獨禁法体系의 理念에 따라 엄격한 原因規制를 내용으로 한 私的独占禁止 및 公正去來확보에 関한 법률이 제정되어 30余年이 경과하였다.

日本獨禁政策의 變遷過程은 편의상 4段階로 구분되며 日本의 独禁政策은 각단계마다 전반적인 經濟政策에 조화되도록 改正補完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왔다.

第1段階는 終戰后부터 51년까지의 經濟民主화와 独禁政策導入期이다. 당시의 정치경제적 背景은 經濟民主화의 추구가 基本目標였다. 패전직후 日本의 경제력은 少數企業에 집중되어 全國企業拂入資本金의 24.7%가 4大財閥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초 제정된 日本의 独禁法은 財閥解體 등 철저한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經濟力集中을 분산시키기 위한 制度的裝置였다. 第2段階는 52년부터 59년까지의 經濟自立化와 独禁政策의 調整期이다. 당시의 배경은 52년 맥아더占領軍으로부터 日本이 독립되었으며 過剩勞動力を 흡수하기 위한 就業機會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經濟自立을 목적으로 한 生산력의 확대가 經濟政策의 기본이었다.

이段階에서는 不況 및 合理化카르텔을 허용하는 등 카르텔規制를 완화하고 規模經濟의 技術的 利益을 추구하기 위하여 企業結合規制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不公正去來行為만은 예외없이 규제했다.

第3段階는 60년부터 69년까지의 高度成長下에서의 独禁政策의 전개과정이다. 당시 日本經濟여건은 고도성장에 따라 물가의 高率引上이 야기되었고, 貿易 및 資本自由化를 내용으로 하는 開放体制에의 本格的履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物價의 高率騰貴현상을 抑制하기 위하여 独禁政策을 물가정책의 一環으로 간주하여 가격이 경직되어 있는商品의 시장구조와 市場形態를 조사하고 카르텔許容範圍를 축소하는 등 카르텔規制를 강화하였다.

第4段階는 70년 이후 변모하는 經濟社會에서의 새로운 独禁政策의 추구로 競爭原理의 정착을 본격화하는 시기이다. 이段階에서의 日本의 경제적 배경은 고도성장으로부터 安定成長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日本獨禁政策의 最近動向은 이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貿易 및 資本自由化政策에 따라 競爭制限 및 不公正去來를 내

□ 特輯：石油流通과 公正去來法

用으로 하는 國際契約을 규제하고 再販売価格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独寡占사업자의 管理価格을 조사하여 가격의 動調的引上을 規制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의 株式保有總額을 제한함으로써 이른바 「문어발」式 기업경영의 幣害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2. 公正去來法의 主要內容

公正去來法의 기본적인 내용은 市場構造를 有効競爭体制로 전환하고 기업의 去來에 관하여 경쟁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시장구조의 競争体制로의 전환은 企業結合을 제한함으로써 少數企業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를 방지하고 상호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企業去來에 関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조건의 설정은 企業間공동행위規制, 不公正거래행위의 禁止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이와같은 独禁政策에는 그것이 시장구조에 관한 것이든 市場行動에 관한 것이든 두가지 相異한 指導理念이 있다. 原因規制 입장과 幣害規制 입장이 그것이다. 原因規制와 함께 경쟁을 제한하는 如何한 형태의 企業集中이나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立場이며, 幣害規制는 경쟁을 제한하는 企業結合이나 공동행위 그 자체를 本質的に 惡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 유익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에 관한 外國의立法例로서는 美國, 日本, 濠洲 등은 原因規制立場을 취하고 西獨, 英国, 프랑스 등 유럽諸국은 幣害規制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엄격한 原因規制를 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幣害規制를 기본으로 하고 原因規制를 가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全体的 운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基本構想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公正去來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競争制限의 企業結合의 制限

資本主義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자기자본의 集積을 통해서 企業規模를 확대하거나 產業資本主義가 본격화되면서 資本의 大型化가 요구되며 기업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形態로 기업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独寡占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높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独禁政策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企業結合을 통해 시장이 独寡占構造로 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 公正去來法도 시장구조를 競争体制로 끌고 가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이와 같은 企業結合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即, 法 第7條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會社가 다른 會社의 株式取得, 任員他位의 兼任, 合併 営業讓受를 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그 결과 競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禁止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一定基準에 該當하는 會社」란 納入資本金이 10億원 이상이거나 總資產額이 50億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中小企業이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는 市場의 競争구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企業結合의 형태가 水平결합, 垂直결합 및 混合결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이 되었다. 여기서 競争과 직접관계되는 水平 및 垂直결합은 그 규제대상이 되나 異種企業이 결합하는 이른바 混合결합은 規制對象이 안된다. 異種間기업결합에 의한「문어발」式 기업경영은 社勢擴張을 위한 有力한 수단으로서 이것이 深化될 경우 少數企業에 의하여 경제력이 집중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本法立案過程에서 이를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論難이 있었으나 競争体制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規制對象에서 제외하였다.

最近 外國의立法例는 이러한 混合結合에 대한 規制條項을 신설하거나 규제를 強化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立法政策으로 이를 신중하게研究해 나가야 할 것으로 料된다.

어떻든 企業結合을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經濟企劃院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이 가져오는 幣害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서이다.

다만 경쟁을 제한하는 企業結合이라 하더라도 產業合理화나 國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一忢 幣害規制입장을 취한 실례라고 볼 수 있겠다.

나. 競争制限의 去來行態規制

公正去來法 第11條 내지 第25條는 사업자의 去來秩序에 관한 조항이다.

첫째는 事業者間에 이루어진 공동행위, 即 카르텔에 관한 규제이다. 事業者間에 공동으로 價格을 결정유지하는 행위, 商品이나 用役에 대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行為, 生產出庫를 제한하는 행위, 去來地域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설비의 新增設이나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그 登錄申請事項이 公共의 이익에 反하여 일정한 去來分野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是正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競争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不況을 극복하기 위한 경우나 產業合理化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共同行為를 登錄制로 한 것은 英国의立法例를 따른 것으로서 暗行의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陽性化하고 国民 모두에게 이를 公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為한 것이다.

그리고 불황극복이나 產業合理化를 이유로 한 競争制限의 공동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條件을 엄격히 하여 운용함으로써例外措置를 극소화하여야 한다. 즉 不況을 극복하기 為한 이유가 특정 상품의 需要減少로 거래가격이 平均生產費를 下廻하여相當企業의 사업계속이 곤란하게 되고 企業의 합리화로써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局限된다.

둘째 事業者團體 即 形態如何를 불문하고 2 이상의 事業者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結合体 또는 그 联合体는 그 設立과 解散時 그 事實을 신고하여야 하며 構成事業者の 去來價格, 販売條件등에 대한 制限行為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構成事業者數를 제한하거나 構成事業者の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세째, 不公正거래행위의 禁止이다.

即 不當한 상대방차별, 부당한 去來強制優越의 地位의濫用, 부당한 拘束條件附去來, 虛偽誇張광고행위등을 禁止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市場지배적事業者が 이러한 不公正거래행위에 속하는 出庫조절행위, 다른 事業者の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하거나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을 新設 또는 増設하는 행위에 대하여 罰則을 重課하도록 하였다.

네째 再販売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이다. 再販売價格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都小売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制度이다.

이러한 再販売가격제도는 生산자가 都小売價格을 정하여 강제함으로써 都小売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배제하게 되고, 유통구조의 정비 내지 근대화에 따른 流通コスト의 節減이 消費者利益으로 환원 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일반소비자의 일상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流通体系上 미리 소비자가격을 定하는 것이 消費者利益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을 정하여 이를 인정하는 마진율등 協定內容을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事業者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不公正去來行為를 내용으로 하는 借款契約, 合作投資계약 및 技術導入계약이나 長期輸入代理店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国内實物經濟에 지장을 주지 않고 国内事業者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以上 公正去來法의 制定경위와 배경, 그리고 制度의 개요를 약술하였다. 우리 經濟는 지금 새로운 転換期를 맞고 있으며 제2의 도약을 위한 對應手段으로 이러한 시책이 나왔음을 이해하고 政府와 企業 그리고 国民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制度를 早期定着시켜야 할 것이다.*

청탁풍조 배격하여 건전사회 이룩하자